
민원인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

1 질의

가.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

나.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토지보상법") 에 따른 기준으로 관계인 (거주자 등) 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

2 회신

가. 토지보상법제4조는 "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 고 하면서, "국방 · 군사에 관한 사업 (제1호) ,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· 인가 · 승인 ·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· 도로 · 공항 · 항만 · 주차장 · 공영차고지 · 화물터미널 · 궤도 (軟道) · 하천 · 제방 · 댐 · 운하 · 수도 · 하수도 · 하수종말 처리 · 폐수처리 · 사방 (砂防) · 방풍 (防風) · 방화 (防火) · 방조 (防潮) · 방수 (防水) · 저수지 · 용수로 · 배수로 · 석유비축 · 송유 · 폐기물처리 · 전기 · 전기통신 · 방송 ·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(제2호) 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청사 · 공장 · 연구소 · 시험소 · 보건시설 · 문화시설 · 공원 · 수목원 · 광장 · 운동장 · 시장 · 묘지 · 화장장 ·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(제3호) , 관계 법률 에 따라 허가 · 인가 · 승인 ·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· 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(제4호) , 국가, 지방자치단체 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(제5호) 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(제6호) 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6제1장 보상절차 사업 (제7호) , 그 밖 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(제8호) "을 규정하

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질의하신 주차장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.

나.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"사업시행자"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, 같은 법 제3조는 "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"고 규정하면서, 제1호는 "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"를, 제2호는 "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(立木) 건물,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"를, 제3호는 "광업권·어업권·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"를, 제4호는 "토지에 속한 흙·돌·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"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,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. [2022.5.23. 토지정책과-3211]